

## 1. 제정이유

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2조의4제3항에 위임조항이 신설(대통령령 제35947호, '26. 6. 23. 개정·시행)됨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 선정 및 소명 절차, 공표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추출 및 소명 절차(안 제3조~제4조)
- 나.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시기 및 사후관리(안 제5조~제6조)
- 다. 심의위원회 심의기준(안 제7조~제8조)
- 라. 심의위원회 심의운영(안 제9조~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
##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고시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,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장 명단 공표 처리 절차

제3조(공표 대상 예정자 추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“장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24조 및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위탁·운영하는 (재)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체불 건설사업자의 기본사항, 행정처분(시정명령, 영업정지, 과징금)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표 대상 예정자를 추출한다.

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출된 명단을 기초로 당해 행정처분권자 또

는 발주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실조회 등을 거쳐 체불 발생일, 체불액, 체불 횟수 등을 파악하여 소명기회 부여 대상자를 선별한다.

③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2항에 따라 선별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명기회 부여 대상자 명단을 사전 심의한다.

제4조(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) ① 장관은 법 제86조의 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통지서를 송부할 때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명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 건설업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2.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건설사업자가 체불액 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3.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·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

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와 대금 청산 여부 등을 종합 심의·의결하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다.

④ 장관은 최종 심의·의결 결과를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명단 공표 시기 및 방법 등) ①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명단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과 내용은 영 제82조의4를 따른다.

제6조(사후관리) ① 장관은 명단 공표가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.

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명단에서 즉시 해당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관은 삭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.

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

제7조(동일한 위반행위)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2회 이상의 처분 횟수를 1회로 보도록 한 ‘동일한 위반행위’란 동일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체불행위를 말한다.

제8조(명단 공표 제외대상) 심의위원회는 영 제82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소명을 제기하는 경우, 장관은 영 제82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(명단 공표 후에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).

1. 체불액의 2/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
2.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모든 건설업종이 등록말소된 경우
3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

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

4.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

## 제4장 심의위원회 운영

제9조(심의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
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영 제82조의5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2.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
3.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4. 그 밖에 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앞 쪽)

##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에 따라 귀하(귀사)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상습체불<br>건설사업자 | 성명 및 상호<br>(법인인 경우 법인 명<br>칭 및 대표자 성명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 이<br>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<br>이) | 만 세 |
| 인적사항          | 주소<br>(법인인 경우 법인의<br>주소 및 대표자의 주<br>소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공표 내용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<br>내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공표 예정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공표 방법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소명 기한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만약 귀하(귀사)께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  
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뒷면 참조)  
에 해당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  
우 같은 법 제8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위 예고내용이 공표됩니다. 끝.

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

※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(전화: 044-201-3578)  
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## 관련 조문

· **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(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(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,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)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 대금,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(이하 "상습체불건설사업자"라 한다)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,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· **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(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)**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"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,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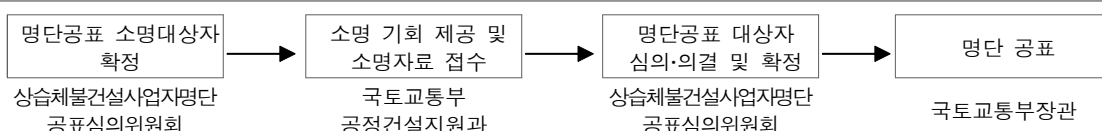
1.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(이하 "상습체불건설사업자"라 한다)가 사망한 경우
2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「민법」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3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
4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· **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)**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·나이·상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·나이·주소 및 법인의 명칭·주소를 말한다)
2.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

## 처리절차



##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

본인(법인)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,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일 : . . . . .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### 1. 대상자 인적사항

|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|
|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|
| 대표이사 | 성명           |  | 생년월일            |  |
|      | 주소<br>(전화번호) |  |                 |  |
| 건설업체 | 상호           |  | 법인번호<br>(사업자번호) |  |
|      | 주소<br>(전화번호) |  |                 |  |

### 2. 소명사유 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2조의3 해당 여부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여부<br>(O,X) | 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채불건설사업자의 사망·실종신고<br>(영 제1호, 제2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채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액을 전액 지급(영 제3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체불 및 청산내역(3항 참조)<br>- 체불 청산 증빙자료(입금증, 통장사본, 상대방 확인서(인감 증명서 포함), 배당표, 판결문 등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채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,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(영 제4호) |               | - 체불 및 청산내역(3항 참조)<br>-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(붙임1 참조)<br>- 자금조달 방안(붙임2 참조)<br>-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(입금증, 통장사본, 상대방 확인서(인감 증명서 포함), 배당표, 판결문 등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) |
| ④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(영 제5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파산선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3.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(2-② 전액 청산,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

| 연번 | 체 불 상대자 | 체 불 액 | 청 산 액 | 잔 액 |
|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1  |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| 2  |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| 3  |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| 4  |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| 5  |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
※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

4. 청산계획서(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 : <붙임 1> 참조

5. 자금조달 방안(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 : <붙임 2> 참조

6. 제출 증빙(붙임) 자료 목록

| 연번 | 증빙자료 제목 | 비 고 |
|----|---------|-----|
| 1  |         |     |
| 2  |         |     |
| 3  |         |     |
| 4  |         |     |
| 5  |         |     |

※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

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 하

<붙임1> ※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

## 청산 계획서(예시)

수신인

기관명 : 국토교통부장관

제출인

이름 :

주소 :

본인(법인)은 기준일 현재 총 ( )회의 체불액 ( )원 중 ( )회에 대하여 ( )원을 지급하고 체불액 ( )원을 미지급하였으며,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산할 계획입니다.

☐ 지급계획

- 김○○ : 0000. 00. 00.까지 전액 지급

- 박○○ : 0000. 00. 00.까지 전액 지급

위 지급계획에 따라 체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, 미지급 시 추후 명단 공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,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제출일 : . . .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<붙임2> ※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

[illegible]

|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카드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<br>표<br>대<br>상<br>자   | 인<br>적<br>사<br>항     | 성 명<br>(법인대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 호<br>(법인명) |  | 나 이<br>(법인인 경우<br>대표자 나이)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주소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 주소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소<br>명<br>검<br>토        | 소명일자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소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토 및<br>확인내용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공<br>표<br>여<br>부        | 공표 여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공표 제외 시 그 사유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 표                  | 공표 제외         | (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및 결과)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사<br>후<br>관<br>리        | 명단 공표 후 소명자료<br>제출일자 |               |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공표 (     ) / 공표 제외 (     )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표 제외 사유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